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. 7. 4 선고 2017가단56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8. 6. 20

판결 선고 2018. 7. 4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1) 경북 의성군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5-38,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(ㄱ) 부분
농기구 창고(목조) 9㎡ 및 별지 도면 표시 18, 19, 38, 37,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(ㄴ)
부분 소외양간(목조) 4㎡를 각 철거하고,

2) 경북 의성군 C 대 747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8~20,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
15㎡를 인도하고,

나. 1) 경북 의성군 D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6, 40-42, 39,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(ㄷ)
부분 화장식(벽돌) 6㎡ 및 별지 도면 표시 33, 43-45,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(ㄹ) 부분
마늘건조장(철골) 4㎡를 각 철거하고,

2) 경북 의성군 D 대 14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25-27, 32-34, 25의 각 점을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토지 60㎡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 중 50%는 원고가,나머지 50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~3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성지사장에 대한 2018.

3. 20.자 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경북 의성군 E리(이하 편의상

'E리'라고 줄여 쓴다) C 대 747㎡(이하 'C 토지'라 한다) 및 D대 149㎡(이하 'D 토지'라 한다)를

소유하고 있는 사실,C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35~38,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

선내 L (ㄱ) 부분 농기구 창고(목조)9㎡ 및 별지 도면 표시 18, 19, 38, 37, 18의 각 점을 차례로

연결한 선내 L (ㄴ) 부분소외양간(목조) 4㎡가 있고, 피고가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~20,18의

각 점을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15㎡ 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,D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별지

도면 표시 26, 40~42, 39,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(ㄷ)부분 화장식(벽돌) 6㎡ 및 별지

도면 표시 33, 43-45,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L (ㄹ) 부분 마늘건조장(철골) 4㎡가 있고,

피고가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-27,32-34,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V. 부분 토지

60㎡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인정된다.

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,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인 C,D 각 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

부분을 철거하고,위 각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조영진

별지